【울산광역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의 안 **1595**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버호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2. 3.(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12. 3.(화)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9. 12. 13.(금)

2. 제안이유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확보하고자 위원수를 증원하고 조문 일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수정(안 제2조, 제7조)

나.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위원수를 11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7조)

4. 근거법규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고자 설치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위원수 증원 및 조문 일부를 자치 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